

2021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어린이집용) 주요 변경내용

● 운영체계 주요 변경내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 운영체계		
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 - 평가대상 선정	<p><변경> 가. 평가대상 선정 ----- (중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주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통보하고, 선정통보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인증유지 어린이집은 기존 인증유효기간과 연계하여 만료 전 평가 실시</u> • <u>미인증 어린이집은 대상선정 통보 후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u> <p style="text-align: center;">※ '20년도에 한해 미인증 어린이집 대상으로 신청을 병행하며, 신청을 하지 않은 미인증 어린이집은 평가 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예정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신규개원,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 재개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선정통보</u> 	<p>가. 평가대상 선정 ----- (중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주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통보하고, 선정통보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평가 어린이집은 평가 도래 시기(인증유지 어린이집은 인증유효기간과 연계하여 만료 전 평가 실시)에 맞추어 평가 실시</u> • <u>신규평가 어린이집은 개원일(또는 운영 재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며, 대상선정 통보 후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 실시</u> <p><삭제></p>
	<p><변경> 나. 평가대상 통보 및 확인 ----- (중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시기)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는 현장평가월 기준 6개월 전, 확정통보(2차)는 현장평가월 기준 2개월 전 실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평가추진 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통보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u> 	<p>나. 평가대상 통보 및 확인 ----- (중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시기)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는 현장평가월 기준 6개월 전, 확정통보(2차)는 현장평가월 기준 2개월 전 실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연간 평가진행 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통보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u>
	<p><변경> 라. 평가시기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의 특정 사유로 인해 통보된 일정에 <u>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3개월 전·후로 평가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u> 	<p>라. 평가시기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의 특정 사유로 인해 통보된 일정에 <u>평가받기 어려운 경우 3개월 전·후로 평가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u>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p>-----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 사유) 확정통보(2차) 월로부터 현장 평가월 중 다음의 사유 발생이 예정된 경우 <p>-----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2주 이상 장기 입원 ※ 평가 참여시기를 조정신청한 어린이집의 평가주는 원가수의 주(유효기간)를 기준으로 적용됨 	<p>-----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 사유) 확정통보(2차) 월로부터 현장 평가월 중 다음의 사유 발생이 예정된 경우 <p>-----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2주 이상 장기 입원 ※ 평가 참여시기를 조정신청한 어린이집의 평가주는 당초기수의 주(유효기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p>현장평가 - 현장평가 주간통보</p>	<p><변경> 가. 현장평가 주간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육진흥원은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 점검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에 현장평가 직전월 말에 1주간의 현장평가 주간을 지정하여 통보하며, 해당 평가 주간 중 현장평가일을 정하여 사전 고지 없이 현장평가자를 어린이집에 파견한다. ※ 고지된 현장평가 주간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능함, 다만,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보육교직원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예 : 보수교육, 상(喪) 등에 한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별로 조정 가능 ※ 현장평가월 이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영유아 재원)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현장평가 진행이 가능하며, 평가과정 중 '현원 0명'으로 확인될 경우 과정이 중단됨 	<p>가. 현장평가 주간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육진흥원은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 점검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에 현장평가 직전월 말에 1주간의 현장평가 주간을 지정하여 통보하며, 해당 평가 주간 중 현장평가일을 정하여 사전 고지 없이 현장평가자를 어린이집에 파견한다. ※ 고지된 현장평가 주간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능함, 다만,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보육교직원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예 : 보수교육, 상(喪), 휴원령 등에 한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별로 조정 가능 ※ 현장평가월 이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영유아 재원)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현장평가 진행이 가능하며, 현장평가 전 '현원 0명'으로 확인될 경우 과정이 중단됨
	<p><변경> 나. 현장평가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평가는 어린이집 1개소 당 2인(정원 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3인(정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현장평가자가 방문하여 1일간 실시한다. ※ 단, 어린이집 정·현원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현장평가 시작 전 어린이집과 현장평가자 간 이해관계 발생 시, 평가를 중단하고 추후 현장평가자를 재파견함 	<p>나. 현장평가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평가는 어린이집 1개소 당 2인(정원 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3인(정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현장평가자가 방문하여 1일간 실시한다. ※ 단, 어린이집 정·현원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현장평가 당일 어린이집과 현장평가자 간 이해관계가 확인된 경우 평가를 중단하고 추후 현장평가자를 재파견함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p>-----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은 원활한 현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평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가능 ※ 평가과정 중 '현원 0명'으로 확인된 경우, 과정이 중단됨 	<p>-----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은 원활한 현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평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가능 ※ 현장평가 전 '현원 0명'으로 확인된 경우, 과정이 중단됨 																		
<p>현장평가 - 어린이집 운영기준 확인</p>	<p><변경> 다. 어린이집 운영기준 확인</p> <p>----- (중 략) -----</p> <p style="text-align: center;">┃ 어린이집 운영 기준 ┃</p> <table border="1" data-bbox="353 795 774 830"> <thead> <tr> <th>연번</th> <th>항목</th> <th>확인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td> </tr> <tr> <td>2</td> <td>보육교직원 근무 상황</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자료 : 보육교직원 관리 대장,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사례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및 보육교사가 역할변경 및 미수행한 경우(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역할을 바꾸어 근무하거나, 역할을 미수행) * <u>반을 맡지 않은 담임교사, 대체교사 등 모두 포함</u> <p>----- (중 략) -----</p> </td> </tr> </tbody> </table>	연번	항목	확인방법	----- (중 략) -----			2	보육교직원 근무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자료 : 보육교직원 관리 대장,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사례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및 보육교사가 역할변경 및 미수행한 경우(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역할을 바꾸어 근무하거나, 역할을 미수행) * <u>반을 맡지 않은 담임교사, 대체교사 등 모두 포함</u> <p>----- (중 략) -----</p>	<p>다. 어린이집 운영기준 확인</p> <p>----- (중 략) -----</p> <p style="text-align: center;">┃ 어린이집 운영 기준 ┃</p> <table border="1" data-bbox="809 795 1230 830"> <thead> <tr> <th>연번</th> <th>항목</th> <th>확인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td> </tr> <tr> <td>2</td> <td>보육교직원 근무 상황</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자료 : 보육교직원 관리 대장,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사례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및 보육교사가 역할변경 및 미수행한 경우(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역할을 바꾸어 근무하거나, 역할을 미수행) * <u>담임교사(단, 보조교사 제외), 대체교사 등</u> <p>----- (중 략) -----</p> </td> </tr> </tbody> </table>	연번	항목	확인방법	----- (중 략) -----			2	보육교직원 근무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자료 : 보육교직원 관리 대장,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사례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및 보육교사가 역할변경 및 미수행한 경우(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역할을 바꾸어 근무하거나, 역할을 미수행) * <u>담임교사(단, 보조교사 제외), 대체교사 등</u> <p>----- (중 략) -----</p>
연번	항목	확인방법																		
----- (중 략) -----																				
2	보육교직원 근무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자료 : 보육교직원 관리 대장,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사례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및 보육교사가 역할변경 및 미수행한 경우(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역할을 바꾸어 근무하거나, 역할을 미수행) * <u>반을 맡지 않은 담임교사, 대체교사 등 모두 포함</u> <p>----- (중 략) -----</p>																		
연번	항목	확인방법																		
----- (중 략) -----																				
2	보육교직원 근무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자료 : 보육교직원 관리 대장,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사례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및 보육교사가 역할변경 및 미수행한 경우(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역할을 바꾸어 근무하거나, 역할을 미수행) * <u>담임교사(단, 보조교사 제외), 대체교사 등</u> <p>----- (중 략) -----</p>																		
<p>종합평가 - 종합평가 진행</p>	<p><변경> 나. 종합평가 진행</p> <p>----- (중 략) -----</p> <p style="text-align: center;">┃ 종합평가 절차 및 내용 ┃</p> <table border="1" data-bbox="353 1427 774 1594"> <thead> <tr> <th>구 분</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 소위원회</td> <td>----- (중 략) -----</td> </tr> <tr> <td>(2단계) 종합평가위원회</td> <td>----- (중 략) -----</td> </tr> </tbody> </table> <p>※ 각 기수별로 종합평가 종료부터 결과통보 전까지 '종합평가 시 최하위 등급 결정 사유'에 대해 해당 여부 재확인</p>	구 분	내 용	(1단계) 소위원회	----- (중 략) -----	(2단계) 종합평가위원회	----- (중 략) -----	<p>나. 종합평가 진행</p> <p>----- (중 략) -----</p> <p style="text-align: center;">┃ 종합평가 절차 및 내용 ┃</p> <table border="1" data-bbox="809 1427 1230 1594"> <thead> <tr> <th>구 분</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 소위원회</td> <td>----- (중 략) -----</td> </tr> <tr> <td>(2단계) 종합평가위원회</td> <td>----- (중 략) -----</td> </tr> </tbody> </table> <p>※ 각 기수별로 종합평가 종료부터 결과통보 전까지 '종합평가 시 최하위 등급 조정 사유'에 대해 해당 여부 재확인</p>	구 분	내 용	(1단계) 소위원회	----- (중 략) -----	(2단계) 종합평가위원회	----- (중 략) -----						
구 분	내 용																			
(1단계) 소위원회	----- (중 략) -----																			
(2단계) 종합평가위원회	----- (중 략) -----																			
구 분	내 용																			
(1단계) 소위원회	----- (중 략) -----																			
(2단계) 종합평가위원회	----- (중 략) -----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p>종합평가 -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확인</p>	<p><변경> 다.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확인 -----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상기 변동사항 확인결과를 종합평가 시 반영 및 평가주기를 조정한다.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또는 확인점검 • 인가변동사항 : 과정중단 및 평가주기 조정 ※ 단, 현장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 또는 <u>직전 현장평가월 이후 4년이 경과한 어린이집은 과정중단 없이 평가 진행</u> 	<p>다.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확인 -----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상기 변동사항 확인결과를 종합평가 시 반영 및 평가주기를 조정한다.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또는 확인점검 • 인가변동사항 : 과정중단 및 평가주기 조정 - <u>기본사항 확인 전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과정중단 없이 진행</u> - <u>현장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 또는 평가 주기 4년이 도래한 어린이집은 과정중단 없이 진행</u> - <u>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사유 발생 시, 경과 조치에 따라 구(舊)법을 적용하여 인증 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처리 및 평가과정도 중단</u> ※ 단, 현장평가 완료 후 인증취소 또는 <u>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 진행 시 과정중단 없이 진행</u>
<p>종합평가 - 등급 결정 및 평가주기</p>	<p><변경> 라. 등급 결정 및 평가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등급은 현장평가 결과(100%)를 바탕으로 하되, 아래 등급 조정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 (중 략) ----- •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중대한 법 위반이력사항(기본사항-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함 ※ 다만, 법 위반 및 행정처분으로 인해 <u>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차기 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하지 않음</u> <p><신설></p>	<p>라. 등급 결정 및 평가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등급은 현장평가 결과(100%)를 바탕으로 하되, 아래 등급 조정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 (중 략) ----- •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중대한 법 위반이력사항(기본사항-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함 ※ 다만, 법 위반 및 행정처분으로 인해 <u>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은 차기 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하지 않음</u> • <u>결과발표 이후, 평가과정 중 발생한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이 추가로 확인되어 최종등급 및 평가주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종합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음</u>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평가 후 관리 - 확인점검	<p><변경> 라. 확인점검</p>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평가내용과 관련된 민원 발생,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평가 이후 대부분의 교사가 이직한 어린이집, 정보공시 부실 어린이집, 필수요소 (3영역) 일정기준 미충족 어린이집, 종전 운영자 변동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전 평가(인증) 결과를 승계한 어린이집 등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내용) 평가지표 전체 영역(4영역 18 지표 59항목), 어린이집 운영기준(영유아 재원사항, 보육교직원 근무상황)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p>※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 최하위 등급 (D등급) 부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활용) 최초 확인점검 결과가 D등급 이거나 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자체개선 후 재확인점검 실시, 재확인점검 결과가 D등급이거나 재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등급 조정, 사후방문지원을 연계 한다. 	<p>라. 확인점검</p>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평가 후(또는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아래의 사유 중 한 가지 이상 발생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표와 관련된 민원 발생 어린이집 • 평가 후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이 발생한 어린이집 중 인증취소사유 및 등급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어린이집 * 법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3백만원 미만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6개월 미만 운영정지 등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한 어린이집 • 평가 후 대부분의 교사가 이직한 어린이집 • 정보공시 항목(7개 항목, 18개 범위)을 미공시하거나 공시시기를 미준수한 어린이집 • 평가지표 3영역 건강·안전 필수요소 8개 중 4개 이상 미충족한 어린이집 • 종전 운영자 변동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전 평가(인증) 결과를 승계한 어린이집 • 확인점검* 결과 1개 이상 영역이 '개선 필요'인 어린이집 * '21.3.1 이후 실시한 확인점검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내용) 평가지표 전체 영역(4영역 18 지표 59항목), 어린이집 운영기준(영유아 재원사항, 보육교직원 근무상황)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p>※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 최하위 등급 (D등급) 부여 및 평가주기 조정, 시정 또는 변경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의6호)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활용 • 확인점검 결과 1개 이상 영역이 '개선필요' 이거나 확인점검을 거부한 경우 지자체로 통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질적 수준 향상 지원 • 2회 이상 연속해서 확인점검 결과 1개 이상 영역이 '개선필요'인 경우 평가등급 및 평가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후방문지원 연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p>평가 후 관리 - 확인점검</p>	<p>※ 기존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재확인점검 결과가 D등급이거나 재확인 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당초 인증 유효기간에서 6개월 감축함</p> <p>● 확인점검 결과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육진흥원은 확인점검 실시 이후 점검 결과를 어린이집으로 통보하고, 확인점검 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된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함 • 시·군·구는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확인점검 당일 발견된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개선결과를 7일 이내에 시·도로 통보함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7일 이내에 한국보육진흥원에 최종 통보함 	<p>※ 기존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u>확인점검 결과 2회 연속 1개 이상 영역이 '개선필요'이거나 거부 등으로 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을 6개월 감축할 수 있음</u></p> <p>● 결과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육진흥원은 확인점검 결과를 어린이집으로 통보하고,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된 경우, 1개 영역 이상이 '개선필요'이거나 확인점검을 거부한 경우에는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는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확인점검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된 경우 → 개선여부 확인 - 1개 영역 이상에서 '개선필요'인 경우 → 개선 지원 계획 - 확인점검을 거부한 경우 → 시정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p>평가 후 관리 -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p>	<p>마.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p> <p>●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사유</p> <p>-----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p><신설></p>	<p>마.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p> <p>●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사유</p> <p>-----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p>※ 다만,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해당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에 대한 자발적 신고 및 결정적 증거 최초 제공 (부모의 아동학대 의심 정황 제보·신고 이전에 이행한 경우에 한함), 성실한 조사 협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상시적 예방 노력(모니터링,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이 인정될 경우 최하위 등급 조정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p>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p>● 처리절차 및 지자체 업무</p> <p>----- (중 략) -----</p> <p>④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의견제출 기한 경과 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최하위 등급 처분 확정 및 관련 조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처분서를 통지하고, 시·도 및 한국보육진흥원에 최하위 등급 조정 처분내용 통보함 <p><신설></p>	<p>● 처리절차 및 지자체 업무</p> <p>----- (중 략) -----</p> <p>④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의견제출 기한 경과 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최하위 등급 처분 확정 및 관련 조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처분서를 통지하고, 시·도 및 한국보육진흥원에 최하위 등급 조정 처분내용을 통보함 <p>※ 최하위등급 조정 결과 공시 3개월 경과 후 사후방문지원 대상으로 통보하고 사후방문지원 실시</p>																								
<p>평가 후 관리 - 평가주기 조정관리</p>	<p>바. 평가주기 조정관리</p> <p>● 처리절차 및 지자체 업무</p> <table border="1" data-bbox="355 836 777 1075"> <thead> <tr> <th>업무주체</th> <th>주요업무</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어린이집</td> <td>-</td> <td>• 인가변동사항 등 평가주기 조정사유(대표자변경, 소재지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발생</td> </tr> <tr> <td>시·도 및 시·군·구</td> <td>평가주기 조정사유 발생 안내 및 통보</td> <td>•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사유 발생 안내 •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 행정지원시스템에 변경내용(변경인가사항 등) 반드시 입력</td> </tr> <tr> <td>한국보육진흥원</td> <td>평가주기 조정 사유 확인 및 대상통보</td> <td>•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 및 확정통보(2차) 진행</td> </tr> </tbody> </table> <p><신설></p> <p>[그림 6] 평가주기 조정절차 업무흐름도</p>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어린이집	-	• 인가변동사항 등 평가주기 조정사유(대표자변경, 소재지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발생	시·도 및 시·군·구	평가주기 조정사유 발생 안내 및 통보	•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사유 발생 안내 •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 행정지원시스템에 변경내용(변경인가사항 등) 반드시 입력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주기 조정 사유 확인 및 대상통보	•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 및 확정통보(2차) 진행	<p>바. 평가주기 조정관리</p> <p>● 처리절차 및 지자체 업무</p> <table border="1" data-bbox="810 836 1233 1075"> <thead> <tr> <th>업무주체</th> <th>주요업무</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어린이집</td> <td>-</td> <td>• 인가변동사항 등 평가주기 조정사유(대표자변경, 소재지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발생</td> </tr> <tr> <td>시·도 및 시·군·구</td> <td>평가주기 조정사유 발생 안내 및 통보</td> <td>•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사유 발생 안내 •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후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행정지원시스템에 변경내용(변경인가사항 등) 반드시 입력</td> </tr> <tr> <td>한국보육진흥원</td> <td>평가주기 조정 사유 확인 및 대상통보</td> <td>•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 및 확정통보(2차) 진행</td> </tr> </tbody> </table> <p>※ 단, 인증유지 어린이집의 경우,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에 해당하는 사유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하고 평가시기 통보</p> <p>[그림 6] 평가주기 조정절차 업무흐름도</p>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어린이집	-	• 인가변동사항 등 평가주기 조정사유(대표자변경, 소재지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발생	시·도 및 시·군·구	평가주기 조정사유 발생 안내 및 통보	•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사유 발생 안내 •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후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행정지원시스템에 변경내용(변경인가사항 등) 반드시 입력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주기 조정 사유 확인 및 대상통보	•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 및 확정통보(2차) 진행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어린이집	-	• 인가변동사항 등 평가주기 조정사유(대표자변경, 소재지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발생																								
시·도 및 시·군·구	평가주기 조정사유 발생 안내 및 통보	•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사유 발생 안내 •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 행정지원시스템에 변경내용(변경인가사항 등) 반드시 입력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주기 조정 사유 확인 및 대상통보	•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 및 확정통보(2차) 진행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어린이집	-	• 인가변동사항 등 평가주기 조정사유(대표자변경, 소재지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발생																								
시·도 및 시·군·구	평가주기 조정사유 발생 안내 및 통보	•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사유 발생 안내 •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후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행정지원시스템에 변경내용(변경인가사항 등) 반드시 입력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주기 조정 사유 확인 및 대상통보	•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 및 확정통보(2차) 진행																								
<p>경과조치 - 인증취소 및 인증유효기간 종료</p>	<p><변경></p> <p>가. 인증취소 및 인증유효기간 종료</p> <p>● 기존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취소 및 유효기간 종료 사유 발생 시, 구(舊)법을 적용하여 인증취소 및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한다.</p> <p><신설></p>	<p>가. 인증취소 및 인증유효기간 종료</p> <p>● 기존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취소 또는 유효기간 종료 사유 발생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구(舊)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p> <p>*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5892호 '18.12.11) 부칙 제4조(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p>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3. 평가지표		
평가 지표의 구성 체계	<p>다. 용어설명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중 '장애아전문'과 '장애영유아'를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p>다. 용어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평가대상 중 임용된 보육교직원은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기타 보육교직원을 모두 포함한다.</u> ● 평가대상 중 '장애아전문'과 '장애영유아'를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 지표 주요 변경내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p><변경> 1-2-2-④ 영유아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마련해 줌</p> <p>----- (중략) -----</p> <p>? 궁금해요</p> <p>Q. 일부 영유아의 경우, 잠들기 힘들어 하거나 부모님이 낮잠 재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p> <p>A. 만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낮잠(휴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유아마다 개별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모든 영유아를 일괄적으로 재우기보다는 잠들기 힘들어하는 영유아의 경우 편안하게 누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낮잠을 자는 다른 영유아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1-2-2-④ 영유아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마련해 줌</p> <p>----- (중략) -----</p> <p>? 궁금해요</p> <p>Q. 일부 영유아의 경우, 잠들기 힘들어 하거나 부모님이 낮잠 재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p> <p>A.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낮잠을 자거나 편안히 쉬면서 새롭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휴식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유아가 피곤해지면 짜증을 내거나 또래와 다투기 쉽고, 졸음이 올 때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하루일과 중 낮잠 시간을 계획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영유아마다 개별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모든 영유아를 일괄적으로 재우기보다는 잠들기 힘들어하는 영유아의 경우 편안하게 누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낮잠을 자는 다른 영유아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p>	내용 보완
	<p><변경> 1-2-3-① 매일 실내 놀이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배정하여 운영함</p> <p>🔍 관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가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나 활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루 중 오전, 오후를 합쳐 2시간 이상 실내 놀이시간을 운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때, 오전 1시간 이상은 연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놀이시간에 대한 평정은 해당 반 영유아 현원의 50% 이상이 등원한 시점 시작함. <p><신설></p>	<p>1-2-3-① 매일 실내 놀이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배정하여 운영함</p> <p>🔍 관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가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나 활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루 중 오전, 오후를 합쳐 2시간 이상 실내 놀이시간을 운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때, 오전 1시간 이상은 연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놀이시간에 대한 평정은 해당 반 영유아 현원의 50% 이상이 등원한 시점 시작함. ※ 해당 반에 연장보육 영유아가 있는 경우, 해당 영유아의 놀이시간까지 인정함.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p>? 궁금해요</p> <p>Q. 실내 놀이시간의 경우, 매일 2시간 이상 계획하되, 오전은 1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정리정돈 시간을 포함해서 1시간으로 계획해도 되나요?</p> <p>A. 실내 놀이시간은 영유아가 개별적 흥미와 관심에 따라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충분한 놀이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하고, 놀잇감을 정리하거나 화장실을 가는 등의 전이시간은 별도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p><신설></p>	<p>? 궁금해요</p> <p>Q. 실내 놀이시간의 경우, 매일 2시간 이상 계획하되, 오전은 1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정리정돈 시간을 포함해서 1시간으로 계획해도 되나요?</p> <p>A. 실내 놀이시간은 영유아가 개별적 흥미와 관심에 따라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충분한 놀이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하고, 다같이 놀잇감을 정리하거나 화장실을 가는 등의 전이시간은 별도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p>? 궁금해요</p> <p>Q.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담임교사가 연장보육까지 담당하는 경우에도 연장보육일지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p> <p>A. 담임교사가 연장보육까지 담당하는 경우 각 반별 보육일지에 연장보육 시 이루어진 일과 운영, 전달 사항 등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p>	세부 사례 보완
	<p><변경></p> <p>1-2-4-① 매일 바깥놀이를 기준시간 이상으로 배정하여 운영함</p>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p>? 궁금해요</p> <p>Q. 바깥놀이 시간에 손 씻기, 화장실 가기 등의 시간을 포함해도 되나요?</p> <p>A. 바깥놀이는 영유아가 일과 중에 실내를 벗어나 실외에서 자연을 경험하며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충분한 놀이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손 씻기, 화장실 가기 등의 전이시간은 별도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p>	<p>1-2-4-① 매일 바깥놀이를 기준시간 이상으로 배정하여 운영함</p>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p>? 궁금해요</p> <p>Q. 바깥놀이 시간의 경우, 유아는 매일 1시간 이상, 영아는 30분 이상 운영해야 하는데, 이때 손 씻기, 화장실 가기 등의 전이시간을 포함해서 유아는 1시간, 영아는 30분으로 계획해도 되나요?</p> <p>A. 바깥놀이는 영유아가 일과 중에 실내를 벗어나 실외에서 자연을 경험하며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충분한 놀이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같이 손을 씻거나 화장실 가기 등의 전이시간은 별도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p>	세부 사례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p><변경> 1-2-5-① 특별활동은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동의서를 받은 영유아에 한해서만 별도로 제공하고 있음</p> <p>🔍 관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활동은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동의서를 받은 영유아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u>연령혼합반</u>으로 편성되어 보육을 받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요청)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p>----- (중 략) -----</p>	<p>1-2-5-① 특별활동은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동의서를 받은 영유아에 한해서만 별도로 제공하고 있음</p> <p>🔍 관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활동은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동의서를 받은 영유아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u>보육(동일반)</u>을 받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요청)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p>----- (중 략) -----</p>	내용 보완
	<p>? 궁금해요</p> <p>Q. 지역사회 시민단체, 지자체 사업(노인 일자리 등)으로 진행되는 축구, 수영, 영어, 한자, 악기(장구 등) 배우기 등도 특별활동에 해당되나요?</p> <p>A. 특별활동은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인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축구, 영어, 한자 등과 같이 기술 연마,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분절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활동은 실시 주체 및 비용 수납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활동 운영규정에 따라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동의서를 구비하여 <u>오후 시간대에 실시</u>하시기 바랍니다.</p>	<p>? 궁금해요</p> <p>Q. 지역사회 시민단체, 지자체 사업(노인 일자리 등)으로 진행되는 축구, 수영, 영어, 한자, 악기(장구 등) 배우기 등도 특별활동에 해당되나요?</p> <p>A. 특별활동은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인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축구, 영어, 한자 등과 같이 기술 연마,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분절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활동은 실시 주체 및 비용 수납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활동 운영규정에 따라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동의서를 구비하여 <u>오후에 실시</u>하시기 바랍니다.</p>	세부 사례 보완
	<p>? 궁금해요</p> <p>Q. 특별활동 강사의 사정으로 오전에 보강을 실시해도 되나요?</p> <p>A. 특별활동은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 프로그램으로 <u>일과 중 오후 시간대에 운영</u>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활동 강사의 사정으로 보강을 실시할 경우에도 <u>오후 시간대에 이루어져야</u> 합니다.</p>	<p>? 궁금해요</p> <p>Q. 특별활동 강사의 사정으로 오전에 보강을 실시해도 되나요?</p> <p>A. 특별활동은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 프로그램으로 <u>일과 중 오후 시간대에 운영</u>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활동 강사의 사정으로 보강을 실시할 경우에도 <u>오후에 실시</u>하시기 바랍니다.</p>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p><변경> 1-3-3-① 교사는 영유아의 연령, 발달수준, 사전경험을 고려하여 놀이 및 활동자료를 준비함</p> <p>----- (중략) -----</p> <p>? 궁금해요</p> <p>Q. 영유아의 놀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자료를 제공해주어야 하나요?</p> <p>A.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따라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육실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놀이, 영유아의 흥미 등을 고려하여 놀이 및 활동자료를 다양하고 충분히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영유아가 놀이 시 상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블록류, 인형류, 역할놀이 소품, 소꿉놀이류, 그림책, 종이류, 필기구류(크레파스, 색연필, 연필, 사인펜 등) 등의 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여 비치하도록 합니다.</p>	<p>1-3-3-① 교사는 영유아의 연령, 발달수준, 사전경험을 고려하여 놀이 및 활동자료를 준비함</p> <p>----- (중략) -----</p> <p>? 궁금해요</p> <p>Q. 영유아의 놀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자료를 제공해주어야 하나요?</p> <p>A.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따라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육실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놀이, 영유아의 흥미 등을 고려하여 놀이 및 활동자료를 다양하고 충분히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영유아가 놀이 시 상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블록류, 인형류, 역할놀이 소품, 소꿉놀이류, 그림책, 종이류, 필기구류(크레파스, 색연필, 연필, 사인펜 등) 등의 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여 비치하도록 합니다. 특히, 영아의 경우 대소근육을 움직이면서 기본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지원해야 하므로, 보육실에 영아가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체 활동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p>	세부 사례 보완
	<p><변경> 1-3-3-③ 놀잇감과 활동자료는 영유아가 수월하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함</p> <p>----- (중략) -----</p> <p>? 궁금해요</p> <p>Q. 만0,1세반 어린 영아들의 경우,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를 자꾸 입에 넣으려 합니다. 안전을 위해 높은 장 위에 쓰기자료를 올려 두었다가 영아들이 원할 때만 제공해 주어도 될까요?</p> <p>A. 만0,1세 영아들도 흥미에 따라 자유롭게 끼적이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영아들의 손이 닿는 곳에 쓰기자료를 항상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이때, 안전을 고려하여 독성이 없는 색연필, 크레용, 자석그림판 등의 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p>	<p>1-3-3-③ 놀잇감과 활동자료는 영유아가 수월하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함</p> <p>----- (중략) -----</p> <p>? 궁금해요</p> <p>Q. 만0,1세반 어린 영아들의 경우,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를 자꾸 입에 넣으려 합니다. 이런 경우 안전을 위해 높은 장 위에 쓰기자료를 올려 두었다가 영아들이 원할 때만 제공해 주어도 될까요?</p> <p>A. 만0,1세 영아들도 흥미에 따라 자유롭게 끼적이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영아들의 손이 닿는 곳에 쓰기자료를 상시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안전을 고려하여 독성이 없는 색연필, 크레용, 자석그림판 등의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p>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p><변경> 1-5-2 영유아의 일상생활, 실내의 놀이 및 활동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를 평가한다.</p>	<p>1-5-2 영유아의 일상생활, 실내의 놀이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를 평가한다.</p>	내용 보완
	<p><변경> 1-5-2-① 일상생활, 놀이, 활동에서 개별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함</p> <p>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별로 놀이와 활동, 일상생활을 모두 포함하여 일과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한 자료가 있음. 영유아 관찰 내용은 특정 활동이나 영역에 치우치지 않음.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에 대한 관찰이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루어짐. <p>----- (중략) -----</p> <p>※ 검토기간 내 놀이와 활동, 일상생활을 모두 포함하여 관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평정함.</p>	<p>1-5-2-① 일상생활, 놀이에서 개별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함</p> <p>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별로 일상생활, 놀이를 포함하여 일과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한 자료가 있음. <p><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에 대한 관찰이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루어짐. <p>----- (중략) -----</p> <p>※ 검토기간 내 일상생활, 놀이를 모두 포함하여 관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평정함.</p>	내용 보완
	<p><변경> 1-5-3-① 원장은 반별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어린이집 전체의 보육과정 운영을 파악하고 있음</p> <p>----- (중략) -----</p> <p>• 원장은 각 반별 보육계획안, 보육일지, 담임 교사와의 면담, 보육실 관찰 및 지도 등을 통해 반별로 보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평가하여야 함.</p>	<p>1-5-3-① 원장은 반별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어린이집 전체의 보육과정 운영을 파악하고 있음</p> <p>----- (중략) -----</p> <p>• 원장은 각 반별 보육계획안, 보육일지, 담임교사와의 면담, 보육실 관찰 및 지도, 학습공동체 운영 등을 통해 반별로 보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평가하여야 함.</p>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p><변경> 2-2-1-① 옥외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음 ----- (중 략)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놀이기구 종류 * 출처 :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래놀이기구 ----- (중 략) ----- ② 모래밭과 모래놀이대 등이 포함됨 ※ 물놀이 도구, 게임놀이, 공놀이, 사회 극적 놀이도구(자동차 등 탈 것, 소꿉 놀이) 등 놀이도구는 놀이기구에 해당 하지 않음 </div>	<p>2-2-1-① 옥외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음 ----- (중 략)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놀이기구 종류 * 출처 :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래놀이기구 ----- (중 략) ----- ② 모래밭과 모래놀이대 등이 포함됨 ※ 물놀이 도구, 게임놀이, 공놀이, 사회 극적 놀이도구(역할놀이) 등 놀이 도구는 놀이기구에 해당하지 않음 </div>	내용 보완
	<p>2-2-1-② 옥외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체놀이터를 이용 하고 있음</p> <p> 관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체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음. ----- (중 략) ----- <p><신설></p>	<p>2-2-1-② 옥외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체놀이터를 이용 하고 있음</p> <p> 관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체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음. ----- (중 략) ----- <p>※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에서 타 시설 (유치원, 어린이집)의 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보육시간 내 원활한 이용이 어려 우므로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p>	내용 보완
	<p><변경> 2-3-1-② 연령별 반 규모는 만0세의 경우 3배, 만1세 이상의 경우 2배를 초과하지 않음</p> <p> 관찰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반의 영유아가 한 보육실에서 보육 되는 경우, 함께 생활하는 영유아의 수는 제시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 영유아의 수는 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혼합연령반의 경우에는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함. ----- (중 략) ----- <p><신설></p>	<p>2-3-1-② 연령별 반 규모는 만0세의 경우 3배, 만1세 이상의 경우 2배를 초과하지 않음</p> <p> 관찰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반의 영유아가 한 보육실에서 보육 되는 경우, 함께 생활하는 영유아의 수는 제시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 영유아의 수는 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혼합연령반의 경우에는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함. ----- (중 략) ----- <p>※ 반별 정원 탄력편성, 농어촌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에도 제시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p>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연령</td><td>만0세</td><td>만1세</td><td>만2세</td><td>만3세</td><td>만4세 이상</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p>※ 장애아전문의 경우, 한 보육실에서 생활하는 장애영유아의 수가 최대 9명을 초과하지 않음.</p>	연령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연령</td><td>만0세</td><td>만1세</td><td>만2세</td><td>만3세</td><td>만4세 이상</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p>※ 장애아전문의 경우,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반 당 1개반에서 1인의 탄력편성이 가능하나, 한 보육실에서 생활하는 장애영유아의 수가 최대 9명을 초과하지 않음.</p>	연령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연령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연령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영역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p><변경> 2-3-2-① 수요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 시간과 방법 등의 운영계획을 수립함</p> <p>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희망 등하원 시간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함. 	<p>2-3-2-① 수요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 시간과 방법 등의 운영계획을 수립함</p> <p>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u>모든 영유아의</u> 희망 등하원 시간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함. 	내용 보완												
	<p>2-3-2-③ 16시 이후 보육되는 영유아에 대해 놀이 및 휴식 등이 운영되고 있음</p> <p>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시 이후 보육되는 영유아를 위한 담당 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놀이 및 휴식 등이 이루어짐. <p><신설></p>	<p>2-3-2-③ 16시 이후 보육되는 영유아에 대해 놀이 및 휴식 등이 운영되고 있음</p> <p>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시 이후 보육되는 영유아를 위한 담당 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놀이 및 휴식 등이 이루어짐. <p>※ 연장보육반은 특별활동을 신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기본보육 시간에 특별활동을 시작하여 연장보육 시간까지 이어지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p>	내용 보완												
	<p>2-3-4-① 신입 영유아 적응 지원 안내문과 적응 과정에 대한 관찰기록이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p><신설></p>	<p>2-3-4-① 신입 영유아 적응 지원 안내문과 적응 과정에 대한 관찰기록이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p>Q 궁금해요</p> <p>Q. 신입원아 적응일지는 해당 월의 영유아 관찰일지로도 인정 가능한가요? A. 신입원아 적응일지에 영유아의 놀이, 일상 생활과 관련하여 관찰한 내용이 기재된 경우 해당 월의 관찰기록으로도 인정 가능합니다.</p>	세부 사례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p><변경> 2-4-1-③ 부모교육을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음</p> <p> 기록</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을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음. <p>------(중 략)-----</p> <p>※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p> <p><신설></p>	<p>2-4-1-③ 부모교육(아동학대 예방교육 포함)을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음</p> <p>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의 내용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포함되어 있음. ● 부모교육을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음. <p>------(중 략)-----</p> <p>※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p> <p>※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진행된 경우도 집단모임으로 인정 가능함</p> <p>? 궁금해요</p> <p>Q.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p> <p>A. 아동복지법 제33조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성 학대 등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 보호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진행 시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양육방법,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아동권리존중 등의 내용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직접 교육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의 다양한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중앙 및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온·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안내한 후 실제로 교육을 수강한 부모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 가능합니다.</p>	<p>기준 변경</p> <p>내용 보완</p> <p>세부 사례 보완</p>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아동학대 예방교육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가정양육지원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수강 가능 • 아동권리보장원 > 알림마당 > 교육·홍보자료에서 동영상, 카드뉴스 등 활용 가능 </div>	
	<p>2-4-2-② 모든 영유아의 부모와 연 2회 이상 개별면담하고 주요 면담 내용을 기록, 관리함</p> <p>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영유아의 부모와 연 2회 이상 (학기 당 1회 이상)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주요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 - 개별면담 실시 일시, 대상 및 면담자, 면담 내용에 대한 기록이 있음. <p><신설></p>	<p>2-4-2-② 모든 영유아의 부모와 연 2회 이상 개별면담하고 주요 면담 내용을 기록, 관리함</p> <p>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영유아의 부모와 연 2회 이상 (학기 당 1회 이상)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주요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 - 개별면담 실시 일시, 대상 및 면담자, 면담 내용에 대한 기록이 있음. - <u>대면면담이 원칙이나, 대면면담이 어려운 경우 유선상담으로 진행 가능함.</u> 	내용 보완
	<p>2-4-3-①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을 월 1회 이상(영아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 기록이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중 략>-----</p> <p><신설></p>	<p>2-4-3-①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을 월 1회 이상(영아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 기록이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중 략>-----</p> <p>? 궁금해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p>Q. 감염병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이용하거나 지역주민 등과 연계한 활동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p> <p>A. 감염병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연계 활동으로 계획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한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계획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경찰관, 소방관, 보건소 직원 등이 실시간 화상으로 안전 및 건강에 대해 교육하는 활동, 기부, 물품 증정, 유아들이 만든 활동 결과물을 이용한 미니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을 통해 영유아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p> </div>	세부 사례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3. 건강· 안전	<p><변경> 3-1-1-①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함</p> <p> 관찰</p> <p>-----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과 세면장의 바닥, 변기, 휴지통 등이 청결하며, 수건은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됨. <p><신설></p> <p>영어</p> <p>-----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식 변기는 사용 후 빠른 시간 내 (1시간 이내) 처리하고 세척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함. 	<p>3-1-1-①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함</p> <p> 관찰</p> <p>-----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과 세면장의 바닥, 변기, 휴지통 등이 청결하며, 수건은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됨. - 변기를 사용할 때마다 즉시 물을 내려 청결한 상태를 유지함. <p>영어</p> <p>-----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식 변기는 사용할 때마다 즉시 처리하고 세척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함. 	내용 보완
	<p><변경> 3-1-1-④ 실내외 공기 질, 온도, 습도, 채광, 조명을 적정하게 유지함</p> <p>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기록이 있음. -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측정 결과가 '양호'에 해당함. ※ 연면적 430㎡ 미만의 어린이집은 관찰 결과로 평정함. 	<p>3-1-1-④ 실내외 공기 질, 온도, 습도, 채광, 조명을 적정하게 유지함</p> <p>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기록이 있음. -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측정 결과가 '양호'에 해당함. ※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에 해당 	내용 보완
	<p><변경> 3-1-2-② 실내외 공간의 고정식 및 이동식 시설설비, 전기설비 등을 위험 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p> <p> 관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실 및 실내 공간의 이동식 시설·설비를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 - 책상, 의자, 활동자료장 등의 가구는 파손된 곳이 없고, 모서리가 날카로운 경우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음. 	<p>3-1-2-② 실내외 공간의 고정식 및 이동식 시설설비, 전기설비 등을 위험 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p> <p> 관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실 및 실내 공간의 이동식 시설·설비를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 - 책상, 의자, 활동자료장 등의 가구 및 설비는 파손된 곳이 없고, 모서리가 날카로운 경우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음. 	내용 보완
	<p><변경> 3-1-2-④ 영유아가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실내외 공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함</p>	<p>3-1-2-④ 영유아가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실내외 공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함</p>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3. 건강· 안전	<p> 관찰</p> <p>-----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실, 보일러실, 자료실 등 위험요인이 있는 장소는 영유아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p> 관찰</p> <p>-----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실, 보일러실, 자료실 등 위험요인이 있는 장소는 출입문, 분리막 등을 닫아 영유아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p><변경> 3-1-3-④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함</p> <p> 관찰</p> <p>----- (중 략)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위험한 물건의 예</p>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접착제, 목공용 본드, 글루건, 살충제, 방향제, 어항수질 개선제, 각종 스프레이, 칠펜, 건전지, 놀잇감으로 제시된 화장품에 내용물이 들어있는 경우(립스틱, 매니큐어 등) 등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약품함, 영유아가 투약을 위해 가져온 약 등 </div>	<p>3-1-3-④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함</p> <p> 관찰</p> <p>----- (중 략)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위험한 물건의 예</p>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용 소독제, 강력접착제, 목공용 본드, 글루건, 살충제, 방향제, 어항수질 개선제, 각종 스프레이, 칠펜, 건전지, 놀잇감으로 제시된 화장품에 내용물이 들어있는 경우(립스틱, 매니큐어 등) 등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품(비상약품, 실외활동용 비상약품, 영유아가 투약을 위해 가져온 약 등) </div>	내용 보완
	<p><변경> 3-2-1-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간식을 제공함</p> <p> 관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수립된 식단과 실제 제공된 급·간식의 내용이 일치함. <p><신설></p>	<p>3-2-1-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간식을 제공하고, 보존식을 보관함</p> <p> 관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수립된 식단과 실제 제공된 급·간식의 내용이 일치함. ● 식품위생법에 따라 보존식은 영하 18℃ 이하의 상태로 보관 시간(144시간)을 준수하여 보관하고 있음. ※ 제공된 급·간식(이유식 포함) 모두 보존식을 보관해야 함. ※ 보존식 보관 여부는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인함. 	기준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3. 건강· 안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식품위생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li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 2.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올바른 보존식 보관 방법 * 출처 :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p> <p>※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보존식 보관 의무 대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식 대상: 제공한 모든 급식 및 간식, 대체 음식 등(기준 음식 소자에 따라 별도 추가 제공되는 음식, 식품 알레르기에 따라 대체 제공되는 음식 등 일체) • 보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의 종류별로 각각 1인분 이상 독립 보관 - 원제품으로 제공하는 식재료는 원상태로 보관 - 보존일 및 폐기일(날짜, 시간(시/분)), 채취자 성명, 메뉴명을 철저히 기록, 보존식 용기에 부착하여 보관 -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 - 스테인리스 재질로 각각의 뚜껑이 있는 전용 용기 또는 1회용 멸균 팩에 보관 - 세척소독 → 보관함 상단 보관 → 음식 담기 직전 소독·건조 사용 </div>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3. 건강· 안전	<p><변경> 3-2-1-②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 급·간식(양, 크기, 맛, 조리형태 등)을 제공함</p> <p> 관찰</p> <p>----- (중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된 음식물은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갑거나, 맵고 짜지 않게 조리되어 자극적이지 않음. 	<p>3-2-1-②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 급·간식(양, 크기, 맛, 조리형태 등)을 제공함</p> <p> 관찰</p> <p>----- (중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된 음식물은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갑지 않으며, 맵고 짜지 않게 조리되어 자극적이지 않음. 	내용 보완
	<p><변경> 3-2-3-①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짐</p> <p>----- (중략) -----</p> <p> 궁금해요</p> <p>Q. 미리 준비해둔 간식을 데우거나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을 때에도 반드시 앞치마와 머릿수건을 착용해야 하나요? A. 급·간식 조리 시에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과일의 껍질을 깎는 전처리 작업과 음식을 데우는 등의 과정도 모두 조리과정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앞치마와 머릿수건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p>	<p>3-2-3-①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짐</p> <p>----- (중략) -----</p> <p> 궁금해요</p> <p>Q. 미리 준비해둔 간식을 데우는 경우에도 반드시 앞치마와 머릿수건을 착용해야 하나요? A. 급·간식 조리 시에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때, 음식을 데우는 것도 조리과정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앞치마와 머릿수건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p>	세부 사례 보완
	<p>3-2-3-③ 1회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 하고 재배식하지 않음 필수</p> <p> 관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를 원칙으로 하며, 1회 조리된 음식을 배식 완료하고 남았을 경우 이를 전량 폐기함. <p><신설></p>	<p>3-2-3-③ 1회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 하고 재배식하지 않음 필수</p> <p> 관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를 원칙으로 하며, 1회 조리된 음식을 배식 완료하고 남았을 경우 이를 전량 폐기함. ※ <u>데친 채소류, 삶은 고기, 육수 등도 조리의 단계를 거쳤으므로 당일 소모 원칙을 준수해야 함.</u> <p>----- (중략) -----</p> <p> 궁금해요</p> <p>Q. 교사용 반찬은 당일 폐기하지 않고 냉창고에 보관하고 먹어도 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당일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해야 하므로, 배식을 완료하고 남았을 경우 이를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용 반찬이라 하더라도 당일 소모하고 재배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김치류 등은 평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식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해야 합니다.</p>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3. 건강· 안전	<p>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보호자에게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강검진에 대해 3회 이상 고지·안내한 후에도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거부할 경우, 원장은 건강검진 고지 여부와 거부사유를 생활기록부 등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p>	<p>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보호자에게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강검진에 대해 3회 이상 고지·안내한 후에도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거부할 경우, 원장은 3회 이상의 안내·요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호자가 수신 확인한 가정통신문, 알림장, 키즈노트 등)를 보관하고 건강검진 실시 여부와 거부사유를 생활기록부 등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p>	
	<p>〈변경〉 3-3-3-②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및 영양 교육을 실시함</p> <p>보육교직원</p> <p>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보육교직원이 연 1회 이상 건강 또는 영양 관련 주제의 교육을 받은 기록이 있음. - 대상 : 원장, <u>담임교사</u>, 조리원 	<p>3-3-3-②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및 영양 교육을 실시함</p> <p>보육교직원</p> <p>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보육교직원이 연 1회 이상 건강 또는 영양 관련 주제의 교육을 받은 기록이 있음. - 대상 : 원장, <u>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u>, 조리원 	내용 보완
	<p>〈변경〉 3-4-2-① 교사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항상 전체 상황을 주시함</p> <p> 관찰</p> <p>-----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는 일부 영유아와 활동을 하고 있어도 주기적으로 전체 영유아를 살펴보는 등 전체 영유아가 어디에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전반적인 상황을 주시하고 있음. <p>-----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연사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유아가 낮잠을 자는 경우에도 <u>수시로 확인함</u>. 	<p>3-4-2-① 교사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항상 전체 상황을 주시함</p> <p> 관찰</p> <p>-----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는 일부 영유아와 활동을 하고 있어도 주기적으로 전체 영유아를 살펴보는 등 전체 영유아가 어디에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전반적인 상황을 주시하고 있음. <p>-----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연사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유아가 낮잠을 자는 경우에도 <u>지리를 비우지 않고 수시로 확인함</u>.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3. 건강· 안전	<p>3-4-3-① 차량에 안전수칙, 영아용 보호장구, 개별 안전띠, 차량용 소화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비상약품을 구비함</p> <p> 관찰</p> <p>-----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함. <p><신설></p>	<p>3-4-3-① 차량에 안전수칙, 영아용 보호장구, 개별 안전띠, 차량용 소화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비상약품을 구비함</p> <p> 관찰</p> <p>-----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함. ※ 하차확인장치의 확인버튼은 차실의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설치함. 	내용 보완											
	<p>3-4-3-③ 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하는 모든 성인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음</p> <p> 기록</p> <p>-----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성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온·오프라인 모두 가능)을 이수하였으며, 이를 증빙하는 수료증이 있음. ※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교육(사이버 교통학교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및 오프라인교육)에 한해 인정함. <p><신설></p>	<p>3-4-3-③ 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하는 모든 성인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음</p> <p> 기록</p> <p>-----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성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온·오프라인 모두 가능)을 이수하였으며, 이를 증빙하는 수료증이 있음. ※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p>- 수료증 발급 방법: 도로교통공단 이력센터-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 교육 이수-수료증 발급</p>	기준 변경											
<table border="1" data-bbox="342 1302 728 1699"> <thead> <tr> <th colspan="2" data-bbox="342 1302 728 1371">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th> </tr> <tr> <th data-bbox="364 1411 458 1451">구분</th> <th data-bbox="458 1411 728 1451">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64 1451 458 1650">신규 안전교육</td> <td data-bbox="458 1451 728 1650">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td> </tr> </tbody> </table>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구분	내용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table border="1" data-bbox="757 1302 1142 1699"> <thead> <tr> <th colspan="2" data-bbox="757 1302 1142 1371">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th> </tr> <tr> <th data-bbox="778 1411 873 1451">구분</th> <th data-bbox="873 1411 1142 1451">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778 1451 873 1650">신규 안전교육</td> <td data-bbox="873 1451 1142 1650">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td> </tr> </tbody> </table>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구분	내용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구분	내용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구분	내용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정기 안전교육</p> <p>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가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확인증 비치 방법(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5항)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정기 안전교육</p> <p>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확인증 비치 방법(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4항) </div>	
영역 3. 건강· 안전	<p><변경> 3-4-3-④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인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p> <p style="text-align: center;">필수</p> <p> 관찰</p>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에 동승한 성인(교사 등)과 모든 영유아가 개별 안전띠(또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차량이 출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안전인증(KC)을 받고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 검사기준(W1, W2 또는 0그룹, 0+그룹, 1 그룹)을 충족하는 제품을 착용함. <p><신설></p>	<p>3-4-3-④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인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p> <p style="text-align: center;">필수</p> <p> 관찰</p>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에 동승한 성인(교사 등)과 모든 영유아가 개별 안전띠(또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차량이 출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는 안전인증(KC)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안전인증(KC)을 받고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 검사기준(W1, W2 또는 0그룹, 0+그룹, 1 그룹)을 충족하는 제품을 착용함.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는 장착 방법을 준수(등받이 고정 등)하여 장착함. 	내용 보완
영역 3.	<p><변경> 3-5-2-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p> <p style="text-align: center;">필수</p> <p> 기록</p>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p>3-5-2-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p> <p style="text-align: center;">필수</p> <p> 기록</p>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보육교직원이 안전교육과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각각 연 1회 이상 받은 <u>기록</u>이 있음.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교육 : 원장,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기타 보육교직원 포함)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 :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 집합 교육, 온라인 교육 등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보육교직원이 안전교육과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각각 연 1회 이상 받은 <u>기록(이수증)</u>이 있음.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교육 :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임용된 보육교직원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 :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 집합 교육, 온라인 교육 등 <p>※ 단, 어린이집 자체교육 시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수교육 위탁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직원이 진행해야 함.</p>	
건강·안전	<p><변경> 3-5-2-③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이 있음</p> <p>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 중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있으며, 이를 증빙하는 <u>이수증(또는 자격증)</u>이 있음. 	<p>3-5-2-③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이 있음</p> <p>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 중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있으며, 이를 증빙하는 <u>이수증</u>이 있음.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4. 교직원	<p><변경> 4-1-1-② 원장은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있음</p> <p> 면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지난 1년 동안 원장으로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p>4-1-1-② 원장은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있음</p> <p> 면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지난 1년 동안 원장으로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u>보육과정 운영 및 어린이집 재무회계 등을 포함한 교육을 이수하였는가?</u> 	기준 변경
	<p><변경> 4-1-1-③ 2년 이상 근속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임</p> <p>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월까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임 - 대상 : <u>담임교사(교사 겸직 원장 제외)</u> • 예 : 2020년 5월에 현장평가를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2018년 5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근무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인 경우 인정함. ※ 출산전후휴가를 비롯한 육아휴직인 경우에 근무교사로 인정함. ※ 개원 2년 미만 어린이집은 최초 원아 입소 시점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교사가 50% 이상인 경우 인정함.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3인 이하인 어린이집은 2년 이상 근속 교사가 1명 이상인 경우 인정함. 	<p>4-1-1-③ 2년 이상 근속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임</p> <p>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월까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임 - 대상 : <u>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 교사 겸직 원장 제외</u> • 예 : 2021년 6월에 현장평가를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2019년 6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근무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인 경우 인정함. ※ 출산전후휴가를 비롯한 육아휴직인 경우에 근무교사로 인정함. ※ 개원 2년 미만 어린이집은 최초 원아 입소 시점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교사가 50% 이상인 경우 인정함(<u>신규인가에 한하며, 대표자 등 변경인가는 해당되지 않음</u>). ※ 교사가 3인 이하인 소규모 어린이집 (정원 20인 이하)의 경우 2년 이상 근속 교사가 1명 이상인 경우 인정함. 	내용 보완
	<p><변경> 4-3-1-① 모든 보육교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보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등이 명시되어 있음</p> <p>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상호 날인함. 	<p>4-3-1-① 모든 보육교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보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등이 명시되어 있음</p> <p>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상호 날인함.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4. 교직원	<p>-----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서에는 개별 보육교직원의 보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p>-----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서에는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필수기재사항 : 보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p>4-3-1-③ 보수 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육 교직원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음</p> <p>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의 보수 관련 규정이 문서화 되어 있고, 이를 준수함. <p>----- (중 략) -----</p> <p><신설></p>	<p>4-3-1-③ 보수 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육 교직원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음</p> <p>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의 보수 관련 규정이 문서화 되어 있고, 이를 준수함. <p>-----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담임교사가 연장보육반의 보육 등으로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한 자료가 있음.</u> 	내용 보완
	<p><변경></p> <p>4-3-2-①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p> <p> 면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제공되는가? ※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제도와 별도로 제공해야 함. 	<p>4-3-2-①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p> <p> 면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제공되는가? ※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제도 외 별도로 제공해야 함. 	내용 보완
	<p>4-3-3-①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 혜택이 마련되어 있음</p> <p>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의 복지를 위해 노력한 근거가 있음 - 복지를 위한 노력의 예 : 포상휴가, 상여금, 명절선물, 보육교직원 동호회 활동지원 등 <p>----- (중 략) -----</p> <p><신설></p>	<p>4-3-3-①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 혜택 이 마련되어 있음</p> <p>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의 복지를 위해 노력한 근거가 있음 - 복지를 위한 노력의 예 : 포상휴가, 상여금, 명절선물, 보육교직원 동호회 활동지원 등 <p>----- (중 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출산전후휴가 및 연차만 제공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4. 교직원	<p><변경> 4-4-1-②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중략) -----</p> <p>? 궁금해요</p> <p>Q. 원장과 교사 직무교육의 정해진 기간은 언제인가요? 승급교육, 특별직무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이 일반 직무교육으로 인정되나요? A. 원장과 교사의 직무교육은 정해진 기간 내 승급교육, 특별직무교육, 원장 사전 직무 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경과한 해인 2020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2020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수 완료하시면 됩니다(2020년 보육사업안내).</p>	<p>4-4-1-②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중략) -----</p> <p>? 궁금해요</p> <p>Q. 원장과 교사 직무교육의 정해진 기간은 언제인가요? 승급교육, 특별직무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이 일반 직무교육으로 인정되나요? A. 원장과 교사의 직무교육은 정해진 기간 내 승급교육, 특별직무교육, 원장 사전 직무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u>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직급(원장, 보육 교사)에 맞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인정됩니다.</u> 또한 2019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원장 및 보육교사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경과한 해인 2021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2021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u>이수하여야 합니다(2021년 보육사업안내).</u></p>	세부 사례 보완